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 주택과- 제12389호(2024.6.27)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지구 A-3BL

■ 공급규모 : 10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4개동 총 317세대 중 사전공급 188세대, 이주자 대학 대상자 10세대, 금회공급 119세대(특별공급 93세대, 일반공급 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93세대(기관추천 7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 58세대, 다자녀가구 7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부양자 1세대, 생애최초 1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세대당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사전 당첨자 배정 세대수	이주자 대학 대상자	분청약 배정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관추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4000282	01	084.8039A	84A	84.8039	23.9181	108.7220	62.5725	171.2946	50.4073	196	107	6	83	5	43	5	8	1	8	70	13	10
		02	084.5666B	84B	84.5666	27.4681	112.0347	62.3973	174.4321	50.2663	79	58	3	18	1	7	1	1	-	1	11	7	4
		03	084.5697C	84C	84.5697	24.7902	109.3599	62.3996	171.7596	50.2681	40	22	1	17	1	8	1	1	-	1	12	5	2
		04	084.9436T	84T	84.9436	25.0937	110.0373	62.6755	172.7128	50.4904	2	1	-	1	-	-	-	-	-	-	1	1	
	합 계										317	188	10	119	7	58	7	10	1	10	93	26	17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사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인복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상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천원)
타입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024.11.25	2025.03.25	2025.07.25	2025.12.25	2026.05.25	2026.10.25	입주지정일	
84A	101동(2, 5호), 102동(3, 5호), 103동(1, 3, 5호), 104동(1, 3, 5호)	196	1층	6	526,055	296,945	823,000	82,300	82,300	82,300	82,300	82,300	82,300	82,300	246,900	
			2층	10	526,055	305,945	832,000	83,200	83,200	83,200	83,200	83,200	83,200	83,200	249,600	
			3층	10	526,055	314,945	841,000	84,100	84,100	84,100	84,100	84,100	84,100	252,300		
			4층	10	526,055	322,945	849,000	84,900	84,900	84,900	84,900	84,900	84,900	254,700		
			5층	10	526,055	329,945	856,000	85,600	85,600	85,600	85,600	85,600	85,600	256,800		
			기준층	150	526,055	335,945	862,000	86,200	86,200	86,200	86,200	86,200	86,200	258,600		
84B	101동(3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79	1층	3	524,582	284,418	809,000	80,900	80,900	80,900	80,900	80,900	80,900	80,900	242,700	
			2층	4	524,582	294,418	819,000	81,900	81,900	81,900	81,900	81,900	81,900	245,700		
			3층	4	524,582	303,418	828,000	82,800	82,800	82,800	82,800	82,800	82,800	248,400		
			4층	4	524,582	311,418	836,000	83,600	83,600	83,600	83,600	83,600	83,600	250,800		
			5층	4	524,582	318,418	843,000	84,300	84,300	84,300	84,300	84,300	84,300	252,900		
			기준층	60	524,582	325,418	850,000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255,000		
84C	101동(1호), 102동(1호)	40	1층	2	524,602	271,398	796,000	79,600	79,600	79,600	79,600	79,600	79,600	79,600	238,800	
			2층	2	524,602	281,398	806,000	80,600	80,600	80,600	80,600	80,600	80,600	80,600	241,800	
			3층	2	524,602	290,398	815,000	81,500	81,500	81,500	81,500	81,500	81,500	244,500		
			4층	2	524,602	298,398	823,000	82,300	82,300	82,300	82,300	82,300	82,300	246,900		
			5층	2	524,602	305,398	830,000	83,000	83,000	83,000	83,000	83,000	83,000	249,000		
			기준층	30	524,602	313,398	838,000	83,800	83,800	83,800	83,800	83,800	83,800	251,400		
84T	103동(6, 7호)	2	1층	2	526,921	451,079	978,000	97,800	97,800	97,800	97,800	97,800	97,800	293,400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사전청약/신청기준)	084.1043A	084.1202B	084.1540C	084.1430T
주택형(본청약/실제 전용면적기준)	084.8039A	084.5666B	084.5697C	084.9436T
약식표기	84A	84B	84C	84T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1.25.	입주지정일
84A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84B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84C	7,100,000	710,000	710,000	5,680,000
84T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393301-04-103642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국민은행	발코니 확장공사(계약금, 중도금, 잔금)	393301-04-103655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해당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계약자 성명 및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101동 801호 홍길동의 경우→ 홍길동801호)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약식표기)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	-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1	-	1
	국가유공자	1	-	-	1
	장기복무 세대군인	1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	-	1
	중소기업 근로자	1	-	-	1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43	7	8	58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8	1	1	10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	-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8	1	1	10
합계		70	11	12	93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td><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요건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하 "세대란")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청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청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전용면적 85㎡ 이하): 5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HA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7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임종아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10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지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한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1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10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임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택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소득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거주자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자격이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적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순위별 청약당첨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입주자지속 순위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 초과 85㎡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정제(70%) 및 추첨제(3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금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전 주택형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